

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 · 응답

※ 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1-123호(2021.04.23.)관련

▣ 자보심사지침 적용시기

연번	질의	답변
1	심사지침 적용은 언제부터 인가요?	2021.7.1.일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.
2	자보심사지침을 건강보험이나 산재, 실손보험에도 적용해도 되나요?	자보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해 만든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.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, 산재, 실손보험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

▣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관련

연번	질의	답변
1	견인치료를 염좌 및 긴장 상병에도 시행할 수 있나요?	견인치료의 적용증에 염좌 및 긴장 상병은 해당 되지 않으며,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.
2	최초 시행일은 언제를 의미 하나요?	최초 시행일은 해당 교통사고 발생 후 최초 방문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견인치료를 시행한 날을 의미합니다.
3	‘사고 당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	교통사고 발생횟수를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2번 발생했을 경우, 첫 번째 사고로 견인치료를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로 실시, 두 번째 사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4	의료기관별로 견인치료를 4주씩 받을 수 있는 건가요?	아닙니다. 한 사고 당 치료기간이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 이므로 교통사고 환자가 A,B,C 기관에서 견인치료를 각각 받았다면, 세 기관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4주 이내에서 견인치료를 인정 합니다.

▣ 입원 중 의과·한의과 협진시 중복(유사)진료 범주 관련

연번	질의	답변
1	<p>입원중 의과·한의과 협진으로 같은날 오전, 오후에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도 중복(유사)진료에 해당되나요?</p>	<p>물리치료 산정지침이나 고시에서 하루 2회 가능한 항목에 한해 시행 가능합니다. 예를들면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</p> <p>○ 예시 1 -(의뢰과) 오전: 표층열 치료 *1회 시행 -(협진과) 오후: 경피경근온열요법 *1회 시행 ☞ 1일2회 산정가능 하므로 각각의 물리치료 인정</p> <p>○ 예시 2 -(의뢰과) 오전: 마사지 *1회 시행 -(협진과) 오후: 근건이완수기요법 *1회 시행 ☞ 1일당 수가로 1회 산정가능 하므로 의뢰과의 마사지만 인정</p>
2	<p>시행 부위가 다를 경우 부위별로 인정 가능한가요?</p>	<p>물리치료 항목을 여러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에 따라, “외래는 1일1회,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” 고 규정한 것은 2가지 이상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더라도 외래는 1회, 입원은 2회까지만 소정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.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81호, ‘19.1.1. 시행)</p>